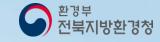
전북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관리법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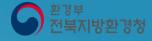
운반업 대상

2021. 11.



화학물질관리법이해 순서

- I.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 Ⅱ. 안전한 운반관리
- Ⅲ. 차량 운반시설 안전관리
- IV.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V. 화학사고 예방
- VI. 정리



1.화학물질관리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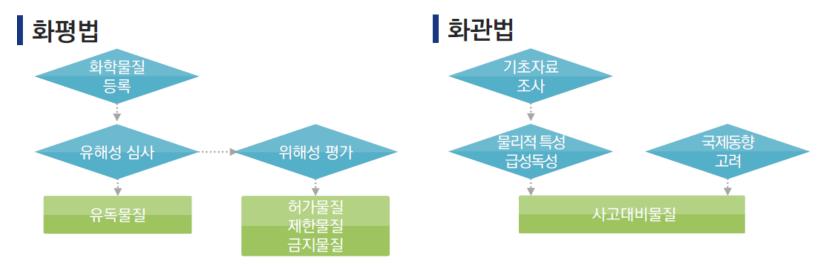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장 총칙 중 제1조)

「화학물질관리법」의 구성

구분	조항	규정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목 기본계획,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관리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제12조)	 화학물질 확인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3조~제26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량 제한, 표시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허가 등 ●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 취급제한 ● 허가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허가 등 ●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금지물질 수출승인 등 •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이행지역사회 고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 취급시설의 개선명령, 자체점검 등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27조~제38조)	 영업의 구분 및 영업허가, 면제, 결격사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안전교육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영업허가의 취소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과징금 등 ✓ 영업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시약판매자의 고지의무 및 신고, 통신판매 등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39조~제47조)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기준 화학사고 발생신고, 현장 대응 등	 화학사고 발생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화학사고 영향조사, 조치명령, 화학사고 특별 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6장~ 제7장	보칙, 벌칙 (제48조~제64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고, 검사, 위임 및 위탁 서류의 기록, 보존, 청문, 자료의 보호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수수료 등벌칙 및 과태료, 양벌규정 등

유해화학물질 분류



분류	분류의 기준	지정물질('21.6)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것	1,056종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고시한 것	미지정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고시한 것	13종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고시한 것	60종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것	97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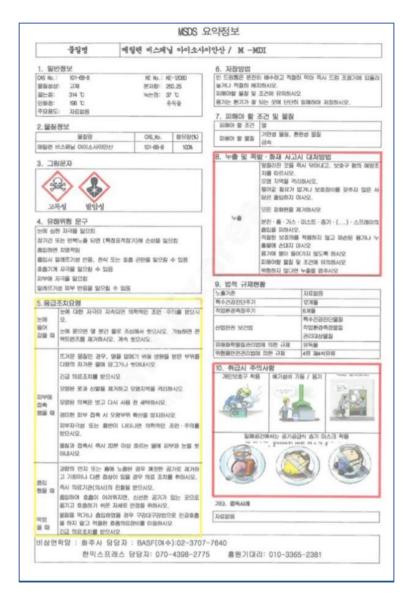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 분류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 시 경과조치)

- 6개월 이내 유해화학물질 표시
- 2년 이내 영업허가
- 4년 이내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비상시 대응요령, 취급 저장방법, 운송관련정보 등 16가지 항목을 정리한 자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운전자 숙지 사항

- 1. 사고시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질 정보 사전인지
- 2. 운송에 필요한 법적 사항 확인
- 3. 개인보호장구 및 그 밖의 사항 숙지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MSDS를 해당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함

운반업 관련 규정

● 해당 업종 직접 적용 규정, ◎ 해당 업종 직·간접 적용 규정

			910 B	5 10 10	5 11 0, @	MO 80	1 00	10 11 0
규정내용	조문	제조업	판매업	알선 판매업	보관 저장	운반업	사용업	수입
화학물질 확인	제9조	•						•
통계조사	제10조	•			•		•	•
배출량조사	제11조	•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3조	•	•	0	•	0	•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4조	•	•		•	0	•	
진열·보관량 제한	제15조		•					
1회 운반량 제한	"	•				0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제16조	•	•		•	©	•	
유해화학물질수·출입등	제17~21조	•	•				•	•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제23~26조	•	•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27~30조	•	•	•	•	•	•	
도급신고	제31조	•	•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32조	•	•	•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33조	•	•	•	•	0	•	
영업허가 사후관리	제34~36조	•	•	•	•	•	•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제39~43조	•	•	0	•		•	
취급실적보고	제49조	•	•	•	•	•	•	•



11. 안전한 운반관리

제13조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은 취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 일반기준:6항목
 - 공통기준(시행규칙 별표1): 세부기준 5범주 40항목
 - 개별기준(화학물질 고시) : 유해화학물질 787 취급기준
 -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운반관련 기준

일반 취급 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 → <u>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지정하는</u>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개정 2020.03.31., 시행 2020.4.1.]

공통 취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 운반관련 기준

- 4. 상차ㆍ하차 및 용기ㆍ포장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 적재 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 뚜껑을 포함한 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의 반응 등으로 인한 변경 및 손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출 것
- ▷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유출・누출 위험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상 유리 등
 파손 우려가 있는 용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운송 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포장을 견고히 하여 운반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용기는 취급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밀봉 뚜껑을 갖출 것



공통 취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 운반관련 기준

5. 운반

- ➢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보관·운반하지 말 것
- ▶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의 경우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
- ▶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 ➢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 등 제외)
- ▶ 차량의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유해화학물질을 두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화물칸으로 이송하고 화물칸은 덮개를 덮을 것
- 유해화학물질 이송 시화학물질의 증기,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반 도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 폭발, 유누출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할 것
-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 시에는 비산하는 분진이 없도록 할 것

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아래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일반기준

- ①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②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 ·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

공통 기준

- ①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②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 ③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④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 ⑤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 ·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개인보호장구 착용(법 제14조)

(착용규정)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 ①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 운반자가 운전 중일 경우
- ② 국소배기 장치 등이 설치된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③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설치된 경우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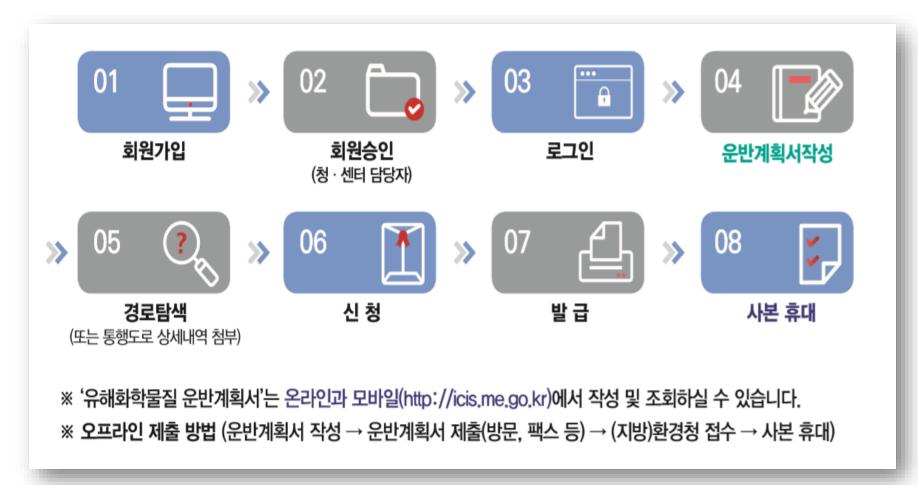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 • 보관량 제한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 • 보관,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진열 • 보관,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운반계획서					
제출대상	유독물질 5ton, 그 외 유해화학물질 3ton 초과 시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의2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제출내용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 등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제출기관	지방환경관서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비고	제출 후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사본 휴대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6. 30.>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접수번호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설명(대표자) 담당자 설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운반 설명(대표자) 담당자 설명 및 연락처(운반차량번호) 주소(사업장) 휴대용 방제장비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의 1부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운반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운반자의 주민등록 번호 미입력, 운반자의 성, 이름 업체명 생년월일 입력 오기 등



※ 운반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운반자의 주민등록 번호 미입력, 운반자의 성, 이름 업체명 생년월일 입력 오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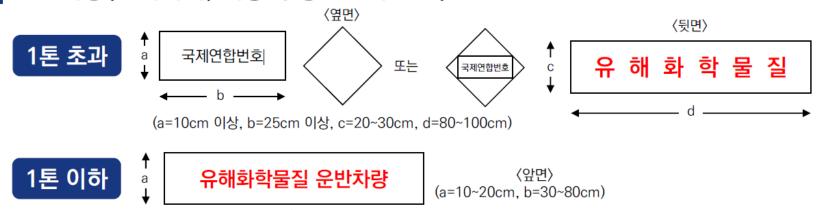
(방재 요령 카드) 물질을 운송할 때에는 운송책임자 또는 운송차량 운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제15조에 따른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운송하는 물질의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운송차량에 비치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 방제 요령 카드					
1. 운반	운송업체		000000(7)	(061) 000-0000		
2. 운반	의뢰업체		0000000	(061) 000-0000 (061) 000-0000	: 주간 : 야간	
3. 명.청	g.		자일렌(크실렌)	4. 유해화학물질	야	독 / 제한 / <u>사고대비</u>
5. 함량	[%], 성상		85[%] 이상, 액체 6. 위험물 유별 제.4.류			L.류 2 <u>성유류</u> (비수용성)
7. CAS [UN	변호 변화		1330-20-7 [1307]	8. 그림문자	<	
		· 스파: 물질 > 뉴춞!	및 서상방법 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상지 및 개인보호구	접지하시오		
9. 취급 시 주의사항 - 방독마스크(유기화화물용 방독필터), 내화학성 보호장갑, 보안경, 안전화 - 유급조치 요령(휴업/피부는 들어갔을 때/ 먹었을 때/ 기타증상)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 토하게 하지 마시오 - 과랑의 먼지 또는 음에 노출된 경유 깨끗한 공기고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를 제거하시오	
		· (피하 · (피하	g 및 반응성 있다 조건) 열·화염·스파크· 이다 물질) - 나고 시 대청방법	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개인	(포시 33032년 보호구) <mark>상기의</mark> 방독면 등 보호) 수로, 하수구, 지하실	개인보호구를 착용 ,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	양지하시오	<u> </u>
10. 방7	제요령	· (적절	화재 시 대체방법 방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 한 소화제) 알콤 프랑 이산회 절한 소화제) -			
			사고 발생 /	니 행동 요령		
1단계	사고 신교 (119, 112)	∼ 성공간	관 : 소방서(119), 경찰서(#용 : 사고워치, 재해자 및	112), 지방유역환경청, <u>광</u> 힐 화재 유무, 물질명/CAS N	시청. 0, 사고 구] 모(유 출 량) 등
2단계	응급조치 및 재해 활산병자	> 응급 : 사고 주변 차략통제 및 주민정근금지 > 확산 방지 조치 : 우수토 확인 및 기연장 불질 제거				
3단계						
			유관기관	전화번호		
1 <u>4</u> 5	방서		1 19	5. 전북지방환경청		1 (063) 238-8932
2왔	중군 환경과		☎ (063) 290-2692	6. 일산화학재난합동방재	센턴	☎ (063) 893-5211

유해화학물질 <u>방제, 요</u> 령 카드						
1. 운반운송업체	000000(#)	(061) 000-0000				
2. 운반의뢰업체	0000000	(061) 000-0000 (061) 000-0000	: 주간 : 야간			
3. 명.칭	1.3 분타되었	4. 유해화학물질	유독 / 제한 / <u>사고대비</u>			
5. 함량%), 성상	0.1[%] 이상, 액체(기체)	6. 위험물 유별	-			
7. CAS 번호 [UN 번호]	106-99-0 [1010]	8. 그림문자				
 취급 시 주의시항 10. 방제요령 	지하 및 서성명합 (분진·홍가스포레이)의 (문진·홍가스포레이)의 (목의 도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 눈물병지, 및 개인보호구 방목마스크, 내화학성 보호장갑. 응급조치, 요령(음입·피부·눈들어, 학원)의 경우 즉시 천물은 기능한, 학화가스에 접촉한, 경우 미지근 포로시 의료진에 면막하고 추적: 안정성 및 반응성 (피해아함 조건) 열화염 스파크: (패어함 조건) 열화염 스파크: (파인보호구) (문진사·홍가스·미스(환경보호) 수로, 하수구, 지하실 목발, 화재 시 대체방법 (소화병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 목보, 화재 시 대체방법 (소화병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 당크 회 (적절한 소화제) 소화 시 양품 표	I만 취급하시오 보안경, 안전화 기상을 때 말었을 때 기타 기상을 하는 말하는 말로 해당 부위를 녹이 기타 기상을 하는 무위를 녹이 기타 기상을 하는 기상을 하는 기상을 보기하는 무기를 보기하는 무기를 보기하는 무기를 되었을 때 기상을 보기하는 무기를 되었을 보기하는 무기를 되었을 보기하는 무기를 되었다. 마시오 됐나 건말 보수 있는 이 나오 됐나 건말 보수 있으나 보수 있는 이 보수 있는 이 기상으로 되었다.	시오 리를 취하시오 급연 할 피하시오 방지하시오 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다음력 도느 안전장치 집정주수 국지			
	(부적절한 소화제) - 사고 발생 시					
1단계 사고 신교 (119, 112)	 사고기관 : 소방서(119), 경찰서(1 신고내용 : 사고워치, 재해자 및 	12), 지방유역환경청, 관합 화재 유무, 물질명/CAS N	발시청. 10, 사고 규모(유출량) 등			
2단계 왕급조치 및 재해 활사병자	및 > 응급 : 사고 주변 차략통체 및 주민정근금지 > 확찬 방지 조치 : 우주론 확인 및 기단상 불질 제거					
3단계 방제작업 ∼ 사고물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방제요령에 의거 방제작업 실시 ► 적합하지 않은 방제작업을 사용할 때에는 사고가 확대되므로 유익						
	유관기관	전화번호				
1 <u>&</u> USA	1 19	5. 전북지방환경청	☎ (063) 238 - 8932			
2 <u>완주</u> 군 환경과	☎ (063) 290-2692	6. 의산화학재난합동방지	H센터 ☎ (063) 893-5211			

구성.	요소	표시장소
① 명칭 또는 제품명	② 그림문자	①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③ 신호어	④ 유해위험문구	②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장소
⑤ 예방조치문구	⑥ 공급자 정보	③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탱크로리 등)
⑦ 국제연합번호(UN No.)		④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 포장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포함)



※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이 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기준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Ⅲ. 차량 운반시설안전관리

(법 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 •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 • 운영 되어야 한다.

구성요소	정의
차량 운송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충전 · 운반할수 있는 탱크 및 그 부속설비로 구성된 운송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차량 운반시설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시설별 기준

구분	시설	기준	사고예방	피해저감	관리기준			
차량 운반시설	운반용기	운반차량	사고예방시설	방제약품 등	차고지 확보	적재고정	운반	_
차량 운송시설	차량고정탱크	제어설비	사고예방시설	방제약품 등	차고지 확보	이입이송확보	운송	유지관리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1호)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2호)

차량 운반시설 검사

구분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검사대상	새 운반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기 등록 차량		사고발생 또는		
검사시기	차량 운행 전	매년	사고발생 7일 이내 또는 환경청 명령시 지체 없이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사후조치	지방환경관서에 신고 및 부적합 시 개선명령 및 이행 등				

[※] 기 등록된 운반차량을 타 업체로부터 양수 또는 구입한 경우 새 운반차량으로 간주되며, 설치검사를 받은 후 영업 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구분	1차	2차	3차
행정처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자체점검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는 법령에서 정한 서식으로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확확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1.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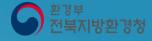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						
점검연월일	점검시간 (00:00 ~ 00:00)	소속	점검자성명	서명		

이상 유무	비고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 문제없음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필요	
	[] 문제없음 [] 장밀 재절검 필요] 부제없음] 자체절검시 조치완료] 장밀 재절검 필요] 무제없음] 자체절검시 조치완료] 장밀 재절검 필요] 무제없음] 자체절검시 조치완료] 장밀 재절검 필요] 무제없음] 자체절검시 조치완료] 경밀 재절검 필요 [] 문제없음 [] 자체절검시 조치완료] 정밀 재절검 필요 [] 무제없음 [] 장밀 재절검 필요 [] 무제없음 [] 장밀 재절검 필요 [] 무제없음시 조치완료 [] 장밀 재절검 필요 [] 무제없음시 조치완료 [] 장밀 재절검 필요 [] 무제없음시 조치완료 [] 장밀 재절검 필요 [] 무제없음시 조치완료 [] 장밀 재절검 필요 [] 무제없음시 조치완료 [] 장밀 재절검 필요 [] 무제없음시 조치완료 [] 장밀 재절검 필요 [] 무제없음시 조치완료] 정밀 재절검 필요 [] 무제없음시 조치완료] 정밀 재절검 필요 [] 무제없음시 조치완료] 기자체절검시 조치완료] 정밀 재절검 필요 [] 무제없음] 가체절검시 조치완료] 정밀 재절검 필요 [] 무제없음] 가체절검시 조치완료] 정밀 재절검 필요 [] 무제없음] 가체절검시 조치완료

- 화관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 서식]
- 차량 운반시설의 주요 자체점검 항목
-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 · 손상 · 노후화 여부
- ⑨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 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 하는지 여부

비고

비고란에는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된 사랑 또는 재점검이 필요한 사랑을 적습니다.
 큐해화학물질 하리시설 자체점검을 하려는 자는 양식의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IV.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 검사결과서,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기술인력명세서, 화물운송사업 허가증(운반업 해당)

구분	세부내용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을 희석·용해·농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 허가 대상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제조업 허가를 받아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영업하는 경우 해당지점의 별도의 판매업 허가대상 대량거래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제품 무상공급 또는 전량 수출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소분,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 대상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판매·운반할 목적으로 일정시설에 보관저장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은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 운반 제외)하는 영업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 제조, 세척, 도장 등 과정과정에서 사용 시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비유해화학물질 제품 생산하는 경우

변경허가

IV

- 업종별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변경대상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변경**(추가되는 경우만 해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에서 제출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46호 서식) 2. 변경사항 증명서류 제출서류 3. 영업허가증 원본 4.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자동자등록증,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관할기관 지방환경관서 제출기한 해당사항을 변경하기 전

변경신고

변경대상	-사업장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취급 유해화학물질 변경으로서 시장출시에 관계없는 시범생산용(60일 이내)인 경우* - 아래에 해당하여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증설 또는 위치변경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 취급 유해화학물질이 변경 또는 추가되거나 함량·농도·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
제출서류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신고서(별지 제46호 서식) 변경사항 증명서류 영업허가증 원본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자동자등록증,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관할기관	지방환경관서
제출기한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단, * 해당사항을 변경하기 전, **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시행규칙 제34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확보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해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운반업)의 차량대수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구분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사용업	운반업		
책임자		1명	1명	1명		
		1,000톤 미만	1명	1명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톤 이상 100,000톤 미만 3명 3명 유해화학			
	연간 취급량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점검원			4명	20대당 1명		
002		1,000,000톤 이상	5명	5명	(단, 20대 이하의 경요 저것의	
	종사자	500명당 1명		5,000명당	경우, 점검원 미선임 가능)	
,	수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만 1명 -	추가 선임	1명		

구분	20대 이하	21~39[40~59 C H	60~79 Ľ H	80~99 L H
선임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책임자	1명	1명	1명	1명	1명
점검원	0명	1명	2명	3명	4명

[※] 운반차량 20대 이하이면서 종업원수 10명 미만: 책임자 1인 선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시행규칙 제34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해임 및 퇴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서에 선임·해임 ·퇴직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에 신고

[제출서류]

- 1. 별지 제49호 및 제50호 서식의 선임·해임·퇴직서
 -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명단
- ✓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시행령 제12조 등 유해화학물질 직무범위
 - [법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법 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 (법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 (법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법 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법 제33조)

	교육대상	교육주기 및 시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2년마다 16시	
2 오케팅하므지까니다	가.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2년마다 8시간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2년마다 16시간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년마다 16시간 (운반자* 8시간)
3. 유해화학물질	나.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년마다 16시간 (운반자* 8시간)
취급담당자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담당자	2년마다 16시간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자)	2년마다 16시간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32시간(최초1회)
	나.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8시간 (최초1회)
4. 기타	다. 전문인력(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16시간(최초1회)
	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은 제외)	매년 2시간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 이내 8시간 안전교육 추가 이수**** 관리자자격취득과정은 시험을 통과해야 이수 인정

- 영업의 폐업 및 휴업 (법 제34조)
 - 예정일 10일 전 신고
 -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등

• 서류의 기록・보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화학물질관리대장 별지 제75호 ~ 제78호 서식)을 5년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 1. 제조 ·수입자 등 화학물질 확인을 한 자
 - 2. 금지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허가를 받은 자
 - 3. 허가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허가를 받은 자
 - 4.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 5.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 6.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는 자 및 시약을 판매하는 자
 - 7.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V. 화학사고 예방



(신고기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 ▶ 지방자치단체, 환경청, 경찰청, 소방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속히 신고
- ▶ 즉시 신고 3회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의 상황	즉시 신고 기준
가.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15분 이내
나. 화학물질이 5kg 또는 5L 이상으로 유출·누출된 경우	15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 해소 시 빠른 시간 내
라. 화학물질이 5kg 또는 5L 미만으로 유출·누출된 경우	빠른 시간 내
마.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	관련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빠른 시간 내

운반차량 사고사례





▶ 사고날짜: 2020. 2. 17.

▶ 사고원인 : 눈길(빙판) 운전

▶ 사고물질 : 질산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

▶ 사고내용 : 터널 내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 정차한 카고트럭을 피하던 질산 탱크로리(24톤)가 전도되었고, 뒤따르던 PVC 탱크로리와 곡물차량이 추돌하면서 터널 내 화재가 발생한 사고

▶ 인명피해 : 사망 5명, 부상 43명

운반차량 사고사례





▶ 사고날짜: 2021. 7. 16.

▶ 사고원인 : 핸들 과조작

▶ 사고물질 : 수산화나트륨 (유독물질)

 사고내용: 수산화나트륨(50%) 적재된 탱크로리(23.3톤) 차량이 2차로 주행 중 핸들 과조작으로 차체 중심을 잃고 갓길 경계석을 넘어 녹지대에서 1시 방향 좌전도되면서 수산화나트륨이 약 150kg 유출된 사고

▶ 인명피해 : 없음

운반차량 사고사례











▶ 사고원인 : 염산탱크로리 하부 핀홀 발생

▶ 사고물질 : 염산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 인명피해 : 없음



안전운행 준수사항

- 1. 졸음운전 금지(충분한 휴식)
- 2. 커브길 과속 금지
- 3. 빗길, 눈길 및 야간 운행시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 철저

화학사고 예방대책

- 1. 제품의 특성 사전 공부
- 2. 운행 전후 차량 및 장비관리 철저
- 3. 비상시(화재, 누출 등) 긴급조치 등 대응 요령 사전 숙지

신고요령 보호장구 점검

- 1. 신고요령 : 15분 이내(119, 112, 환경청 등)
- 2. 개인보호장구 점검: 보호복, 호흡보호구의 착용 및 정기 점검

▶ 운반업 허가 여부 ▶ 허가증상 종업원 수와 실제 종업원 수 확인 인허가 ▶ 책임자 근무여부 등 확인 ▶ 허가증 상 전체연간취급량과 실제 취급량 비교 확인 사항 ▶ 허가증 상 운반장비 능력과 실제 장비 비교 확인 ▶ 허가받은 품목 및 운반장비 확인 등 ▶ 운반계획서 작성 및 제출 확인 대장관리 및 ▶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대장(주1회) 작성 여부 및 보관 확인 보고 ▶ 실적 보고 확인 ▶ 운전자 등 취급자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여부 교육 및 ▶ 종사자 교육 실시 및 보고 여부 확인 관리자 ▶ 관리자 적정 선임 여부 확인 등

운반업 점검사항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차량 점검표



점 검 일 시	년 월 일	요일	날씨:	점검자	(인)
점 검 장 소					
차 량 번 호			년식	제품명	
트레일러번호			년식	용량(톤)	
운 전 자	연락처	TT:		협력사	

구분	점 검 항 목		상	태
TE				불량
	엔진 오일 상태			
		냉각수 상태		
엔 진		연결호스 등 누출 여부		
		엔진 가동상태(진동·소음, 매연)		
		연료탱크 상태(누유, 청결)		
		브레이크등, 라이트등, 비상등 상태		
전 지		방향등, 번호등, 차폭등 상태		
		경음기, 윈도 와이퍼 작동상태		
		월볼트 상태(절손 · 풀림)		
제 동				
타이어 상태	1축~5축	운전석		
HOLOL SAL	1-4 -0-4	조수석		
	운반용기의 파손(작은구멍 등), 부식 또는 균열 여부			
	적재 시 바닥에 물 또는 다른 유해화학물질 존재 여부			
유해화학물질		주입호스 차단밸브 뚜껑 밀폐 여부		
운반시 점검사항	탱크로리의	용접부위 등 취약 부분 균열 여부		
검검사망	주변상태 적정 여부	상부 뚜껑 밀폐 여부		
	직성 여부	배관의 호스 고정 상태		
		뺄브 주변 파손 여부 등		
	기타	유해화학물질 표시(국제연합번호, 그림문자, 표식 등)		
	714	비상레바(비상스위치) 이상유무		
특이사항				

※ 사고예방을 위해 자가점검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차량 점검표



처랑번호	소유업체		거래업체	
점검업체	운송물질		운 전 원	
점 검 일	점검자	(인)	확 인 자	(인)

구분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20115121	1	자동차등록증 / 운전면허증	
	적법차량	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 보험가입증명서	Q.
	MALL MARKE	1	비상시 대응요령(방법)	
	비상시 대처방법	2	비상시 만전수칙(유의사항)	
		1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증(사본) /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증(사본)	
	치랑내 비치 품목	2	취급시설 검사(설치, 정기, 수시) 결과서(사본) / 운반계획서(사본)	
비치서류		3	방재요령카드 / 화학물질정보카드	
및도구		4	차량점검일지 또는 점검카드	
		1	안전장갑(화학물질용) / 안전장화(화학물질용)	
	개인보호장구 (중분한 수량 확보)	2	보호복(화학물짐용)	
		3	호흡보호구(정화통 포함)	
	방제장비 및 방제약품	1	소화기(1개 이상)	
		2	메가폰 / 손전등 / 적색기	
		3	차 바퀴 고정목(2개 이상)	J
		4	로프(15m 이상, 2개 이상)	
		5	삽, 흡착포 등 방제물품	
	차량 외관 점검	1	차량 외부, 하부 녹, 파손 발생	
		2	하부 누유 및 누출 여부	
		3	주행장치(휨, 휨볼트, 허브캡, 액슬)	
		1	오토미션오일 상태 및 누유 점검	
	각종 오일 및 상태 점검	2	부동액, 워셔액 상태 및 누수 점검	
	0400	3	브레이크오일 상태 및 누유 점검	
차량점검		1	베터리 점검	
	소모품 및	2	최고속도 제한장치 점검	
	작동 점검	3	에어컨 및 히터 작동상태 점검	
		4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상태	
		1	에어라인 / 전기 인입배선	
	트레일러 연결부, 탱크 맨홈	2	샤시 연결용 커넥터	
	O L-B	3	탱크 맨홀 및 밸브 잠금 확인	

※ 사고예방을 위해 자가점검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학사고 예방이 최선 입니다.

감사합니다

